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나203779(본소), 2024나203786(반소) 판결
[건물등철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절차이행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나203779(본소), 2024나203786(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2 선고 2023가단7659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재

변론 종결 2024. 10. 24.

판결 선고 2024. 12. 5.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2. 선고 2023가단76590(본소),
2023가단82915(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1층 181㎡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건물 2층 136㎡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28. 7. 1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9. 10.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이는 종전 사건 제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자, 그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성립한 종전 사건 조정조서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피고들의 위 주장이 타당하려면 적어도 F이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8. 8. 11.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상태에서 F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분리하여 그 건물은 자신이 보유한 채 토지만을 G에게 매도한 이후 다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1998. 8. 11.경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던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착공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김혜령

판사홍유정

별지

1) 2024. 10. 21.자 피고들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한다. 이는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을 '2028. 7. 11.자 취득시효완성'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취지이다.